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2. .

발 의 자 : 민병덕 의원

찬 성 자 :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라는 제도를 통해, 영국·일본은 각국의 법률 개정을 통해 연차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약화 및 EU·일본·영국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equivalence) 불인정에 따른 기업들의 중복 공시 부담의 위험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 2 신설)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3. 반기·분기보고서 적용 조정(안 제160조 개정)
4.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단, 본 호에 따른 의무는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서류에 기재할 수 있다.]”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9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른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제44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 중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를 “이 경우 제159조제2항(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제15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무 개시 후 최초 3개 사업연도와 관련한 제15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제444조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u>4의2.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단 본 호에 따른 의무는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 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서류에 기재할 수 있다.]</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159조의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등)</u> ① <u>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u>

현행	개정안
	<p><u>의 심의를 거쳐 제159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른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도 고려하여야 한다.</u></p> <p><u>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④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u></p>

현행	개정안
	<p><u>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관은</u>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u> <u>야 한다.</u></p> <p>⑤ <u>금융감독원은 제442조 제1항</u> <u>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u> <u>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u> <u>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u> <u>시기준 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u> <u>다.</u></p> <p>⑥ <u>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u> <u>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u> <u>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u> <u>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u> <u>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u> <u>다.</u></p>
<p>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p>	<p>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p> <p>-----</p> <p>-----</p> <p>-----</p> <p>-----</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무 개시 후 최초 3개 사업연도와 관련한 제15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제444조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